

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93-13 일대 「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1. 20.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-13 일대
- 나. 면 적 : 9,011.9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명 칭 : 신내동 493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93-6

5. 변경내용 : 임원 및 대의원 변경